

19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명단

구 분	성 명	연 령	현 직	주요 학·경력	비 고
대표위원	김명수	41	시 의 원	· 미국 호놀룰루대 사학과 · 덕우라이온스클럽 354-A지구 이사	
위원	송미화	39	시 의 원	· 덕성여대 국문과 ·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집행위원	
"	한춘자	56	시 의 원	· 고려대 경영대학원 · 전국지방의회 여성의원 동우회장	
"	김홍모	62	공인회계사 (김홍모회계사무소)	· 동국대 경상대학 · (주)한빛은행 세무상담 위원	
"	김홍렬	37	공인회계사 (선진회계법인)	· 서울대 사범대 · 안건회계법인	
"	최대식	42	공인회계사 (케이앤씨회계사무소)	· 동국대 대학원 회계학과 · 청운회계법인	
"	신용완	37	공인회계사 (세종회계법인)	· 전남대 대학원 · 산동회계법인	
"	백진환	50	공인회계사 (대주회계법인)	· 원광대 경영학과 · 청원회계법인 근무	
"	김영철	60	공인회계사 (안건회계법인)	· 성균관대 대학원 상학과 · 한국체육과학 연구원 감사	
"	박문식	40	공인회계사 (재원회계법인)	· 서울대 경제학과 · 재원회계법인감사	

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  
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  
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 
안 제4조제2항중 "65세 미만이고"를 "63세 미만  
이고"로 한다.

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  
조례안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(이하 "시  
민"이라 한다)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  
을 강화하고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  
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 
시 시민감사관(이하 "시민감사관"이라 한다)  
을 설치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, 지방자  
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의4 및 동법  
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10조의17  
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  
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 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 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